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취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처리

***의 아래 취득세(부동산) 신고건에 대하여 경정청구서가 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 처리코자 합니다.

1.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내역

- 가. 납 세 자 : ***
- 나. 과세대상 : *****
- 다. 신고납부금액 : *****

2. 경정청구사유 : 갱개계약으로 인한 연부취득 납세자 변경

가. 청구인 ***은 2015. 7. 21. 부동산 연부취득계약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등 ***** 신고납부한 후, 2015.11.19. 갱개계약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청구함.

3. 관련법령

- 가. 지방세기본법 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
- 나.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

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(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)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.

4. 검토결과

가. 청구인은 해당 취득물건*****에 대하여 2015.5.22. 연부취득계약하고 2015.7.21. *****을 신고납부 하였으나, 2015.11.19. 갱개계약으로 연부취득계약을 양도하여 연부취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에서 *****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취소하고 환급처리코자 합니다.

- 나. 취득세등 결정결정내역

